

1. 사업개요

 사업목적

- 과학벨트 기업 및 4차 산업혁명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벨트 내 우수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,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

 사업내용

-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, 판로개척, 시험 인증·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

2. 지원내용

 예산규모 : 총 753백만원 이내(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)

- * 1차 모집 이후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 예정

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격 :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소재한 기술기반 기업

- * 접수마감일 기준 과학벨트 기능지구(세종, 천안, 청주), 거점지구(대전 신동·둔곡)에 소재한 기업

** 필요시, 기업, 연구기관,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

*** 단, 신청일 기준 과학벨트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

 지원내용

- 사업화·제품화 등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 관련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

지원분야	지원내용(예시)	지원규모
제품제작	시제품 제작·보완 개선	50백만원 이내
	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·접목	
	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	
	특화제품 개발 지원	
판로개척	국내외/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	30백만원 이내
	국내외 바이어 발굴	
	시장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	
	유망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개발	
시험분석	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	30백만원 이내
	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·인허가 등	
기타	M&A, IPO 등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	-
	지원분야 외에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	

- * 지원 규모, 지원금액, 지원대상 과제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
 민간부담금 비율 : 정부출연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

- *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사용

** 중소·중견기업 10퍼센트 이상, 대기업 15퍼센트 이상

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모집공고	신청접수	사전검토	선정평가 및 이의신청	협약체결
과기부, 특구재단 홈페이지	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	신청자격 사전검토	평가위원회 (발표평가),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	미정
'21. 3. 18 ~ '21. 4. 19	'21. 4. 5 ~ '21. 4. 19	'21. 4월 중	'21. 5월 중	'21. 5월 말 (예정)

*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-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선정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추진계획 타당성 (30)	•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	15
	• 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	15
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(40)	•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	20
	•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	20
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(30)	•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	20
	•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	10
합 계		100

*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

< 제외대상 항목 >

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■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

■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

1) 사전지원제외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

- ① 기업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

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)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<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>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: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
-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
-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

2) 사후관리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)

-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
-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
- ③ 부분자본잠식
-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
-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
-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한정"

<사후관리 조치사항>

-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"사후관리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5. 신청방법

□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

구분	홈페이지	비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	www.msit.go.kr	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www.innopolis.or.kr	
PMS 사업관리시스템	pms.innopolis.or.kr	
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	www.ntis.go.kr	

□ 신청방법 :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
○ 신청 접수기간 : '21. 4. 5.(월) ~ 4. 19.(월), 15:00까지

*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·기업회원 가입 이후, 사업 신청접수 가능

□ 제출서류 :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HWP, 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
번호	서류명	서식	비고
1	사업계획서	서식 1호	주관기관 제출
2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2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4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서식 4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5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5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6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
7	법인등기부등본	-	모든 기관 제출 *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8	표준재무제표/회계감사보고서	-	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 * 최근 3개년도('18~'20년도)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-	주관/참여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 *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10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-	모든 기관 제출
11	중소기업/중견기업 확인서	-	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 * 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
12	기능지구 및 거점지구 소재 증명서	-	해당시 제출 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본사가 아닌 공장, 기업 부설연구소, 연구전담부서, 지사 등이 해당지역에 소재할 경우 제출 ※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로 거점지구임을 증빙할 수 없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의 입주(변경)승인서로 제출

*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 발급분만 인정

** 개인사업자의 경우 '20년도 표준재무제표는 세무사 날인이 포함된 재무제표확인원 우선 제출, 협약체결 후 홈텍스 발급분 별도 제출 필수

※ 주의사항 :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
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사업문의(사업계획서 작성, 제출서류 등)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김기윤 연구원	042-865-8847	kky0322@innopolis.or.kr
최재석 연구원	042-865-8846	seokenzi@innopolis.or.kr

- PMS 시스템 문의(PMS 가입, 시스템 파일등록 등)

담당	연락처
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	042-865-7001, 7002, 7003